

## 2008년도 하반기 주요 검사법령 제·개정(Ⅱ)

### 1. 강화플라스틱(FRP)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648호, 2008. 11. 10)

- 플레저 보트에 대하여는 외판 두께측정에 의한 간이한 선체 강도기준을 적용하고 국제표준규격(ISO)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
  - 플레저 보트에 대한 간이한 강도시험기준 마련
  - 플레저 보트에 대한 국제표준규격(ISO) 수용
  - 플레저 보트에 대한 갑판구 코우밍 높이, 현창기준 및 방수구 면적 산정기준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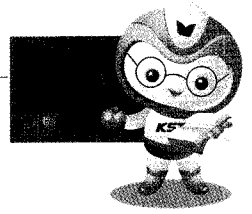
### 2.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649호, 2008. 11. 10)

- 소형 플레저 보트에 설치하는 창구 등의 코밍높이와 방수구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고, 선등·기적 등에 대한 외국정부 검사이력을 인정하는 등 플레저보트에 대한 완화된 검사기준 마련
  - 소형 플레저 보트에 대한 간이한 강도시험기준 마련
  - 소형 플레저 보트에 대한 국제표준규격(ISO) 수용
  - 소형 플레저 보트에 대한 갑판구 코우밍 높이, 현창기준 및 방수구 면적 산정기준 완화

### 3. 선박구획기준 개정

#### ▶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704호, 2008. 12. 3

- 여객선에 대한 수밀구획요건 등을 강화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 제2-1장(건조-구조, 구획 등)의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
  - ⇒ IMO 제82차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(216/82) 수용
  - 여객선에 대한 구획요건을 정하고 계산방법 변경
  - 여객선에 대한 수밀구획요건 강화 및 여객선에 침수탐지장치 설치 신설



## 2008년도 하반기 주요 검사법령 제·개정(II)

### 4.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 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919호, 2008. 12. 30)

- 주강재로 제작된 선수재 및 선미재 등에 대한 재료시험에 비파괴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이중저 적용대상 선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
  - 선박길이 30미터 선박에 대한 경감기준을 삭제
  -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플레저보트의 선체구조는 국제표준규격(ISO)을 적용
  - 주강재로 제작된 선수재 및 선미재 등에 대한 재료시험 시 초음파탐상시험도 가능
  - 선박구획기준 제14조제8호에 따라 선저의 손상을 받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선박은 이중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가능
  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침수 후의 평형요건을 신설

### 5. 선박방화기준 개정 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920호, 2008. 12. 30)

-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카페리화물선은 자동폐쇄문 대신에 수동 폐쇄문도 설치가능토록 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사항을 수용
  - 선실발코니의 정의를 신설
  - 선실발코니에 설치하는 의자 및 테이블 등은 불연성재료의 골조를 사용
  - 인접한 선실발코니와 분리하기 위한 부분격벽 및 부분갑판은 불연성재료로 시공
  -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카페리화물선은 자동 폐쇄문 대신 수동 폐쇄문을 설치가능

### 6. 선박복원성기준 개정 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921호, 2008. 12. 30)

- 호소·하천·항만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에 적용하는 풍속기준을 풍랑경보 발효 수준으로 완화 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기타 기준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
  - 호소·하천·항만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에 적용하는 풍압(풍속) 기준을  $328.7\text{N/m}^2$  (21m/s)로 완화
  - 국제비손상복원성기준(IS Code)에 따라 복원정곡선 면적 산출 시 횡경사각의 범위에 40도 외에 당해 선박의 해수유입각을 그 최대 경사각으로 인정